

'90. 9월 석유수입 손실의 보전

- 동력자원부 -

정부는 페르시아만 사태 발발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급등으로 발생한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하여 9·15일 이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원유 및 제품의 수입손실을 보전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90. 9월 통관분중 9·15일 이후 도착한 석유수입 손실을 배럴당 10.48\$(7,519원/B)으로 확정하여 '90. 10. 31이후부터 보전키로 함.

- 9월 통관분중 9·15일 이후 국내 도착한 원유가격이 배럴당 27.02달러에 달하고 환율 역시 717.74원/\$로 나타남에 따라
- 국내유가 기준인 원유가 18\$/B, 환율 710원/\$, 관세율 1%를 상회하여
- 배럴당 10.48\$의 유가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해소하기 위함.

9월중 원유도입의 손실보전 규모는 405억원에 달하며, 등유·저유황경유, B-C油의 수입손실 344억원을 포함한 9월중 총 보전규모는 749억원으로 잠정 집계됨.

- 정확한 보전규모는 유개공의 항차별 물량확인 절차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동력자원부 고시(제90-69호)

원유도입 손실보전에 관한 요령 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도입 손실보전에 관한 요령(동력자원부고시 제90-5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0. 10.
동력자원부장관

-다 음-

-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손실보전금액) ①법 제17조의 4 제3호의 규정에

'90. 9월 손실보전 규모(잠정)

	補填 單價		物量(천배럴)	金額(億원)
	원 / B	\$ / B		
原 油	7,519	10.48	5,386	405
製 品	8,200	11.42	4,195	344
燈 油	10,411	14.51	1,349	141
輕 油	9,394	13.09	1,233	116
B-C 油	5,437	7.57	1,613	87
計			9,581	749

의한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보전 금액은 수입 원유 1배럴당 보전단가(이하 "보전단가"라 한다)에 석유정제업자별 당해월 통관물량을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은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통관물량에 포함한다.

1. 석유수입업자가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통관한 원유. 이 경우 석유수입업자의 수입단가를 석유정제업자의 수입단가로 본다.

2. 석유정제업자가 한국석유개발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원유를 상환하기 위해 수입하여 상환을 완료한 원유

•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손실보전의 제외대상등) ② 손실보전 제외대상 금액은 아래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석유제품 공급직전 월에 통관된 원유량이 제1항의 손실보전 제외대상 석유량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월의 석유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를 생산한 정제업자의 직전월 통관분원유에 대한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단가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동력자원부고시(제90-68호)

원유도입 손실보전 단가등에 관한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력자원부고시 제90-59호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도입 손실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 .

동력자원부장관

-다 음-

1.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동력자원부고시 제90-59호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990년 9월중 수입원유에 대한 손실보전단가는 수입원유 1배럴당 7,519원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飲酒운전 상식

• 血中 알콜농도 1mg(0.1%)

-체중 60kg 기준

소주 : 1.2홉을,

양주 : 0.7홉을,

맥주 9홉(2.5병)을 마신뒤 30분 이내 나타나는 수치임.

• 血中 알콜농도 0.5mg 이상

-刑事입건

0.5~0.9mg : 면허징지 100일

1.0mg : 면허취소

3.5mg이상 : 구속

따라서 소주 2잔, 양주 1잔, 맥주 1병 정도로 만족하십시오.